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882

발의연월일: 2024. 12. 24.

발 의 자 : 김 건 · 김석기 · 박충권

안철수 • 최보윤 • 박상웅

권영세 • 김용태 • 김미애

인요한 • 윤상현 • 정성국

김기웅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이나 민자유치, 고용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그러나, 접경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대남방송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으나 이러한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접경지역 주민의 복지향상 지원을 위한 목적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북한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7조의2(대남방송소음피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향해 방송등을 통하여 발생시키는 소음(이하 "대남방송소음"이라 한다)으로인해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남방송소음 실태 파악 및 대남방송소음피해 지원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대남방송소음피해 지원 대상,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원 결정기준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남방송소음피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대남방송소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 <u>신 설></u>	제 27조의2(대남방송소음피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향해 방송 등을 통하여 발생시키는 소음(이하 "대남방송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남방송소음 실태 파악 및 대남방송소음 실태 파악 및 대남방송소음 실태 파악 및 대남방송소음피해 지원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을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을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대남방송소음피해 지원 대 하여야 한다. ④ 대남방송소음피해 지원 대 상,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원결정기준 등 지원에 필요한 사
	<u>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